

**가구용**

ID				
----	--	--	--	--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인 SH도시연구원은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 및 SH도시연구원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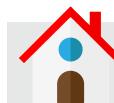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조사 주관기관 : SH도시연구원 성진욱 연구원(02-3410-8521)
- 조사 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김지혜 팀장(02-3014-0122)

**2016년 9월**

가구번호		가구 구분	① 원가구 ② 대체가구
응답자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주소	_____ 구 _____ 동 세부주소 :	_____	
단지명		동/호수	_____동 _____호
면접일시	월	면접 시작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 종료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원 ID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 A. 가구사항

A1. 귀 택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직계가족 모두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가구원이란?

가구원

- 1) 동거,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포함
  - 2)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제외)
  - 3) 다른 지방 근무(해외 근무 포함), 학업(해외 유학 포함),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직계가족

비가구원

- 1) 함께 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자녀
  - 2) 분거한 기혼자녀
  - 3) 같이 살고 있는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 4)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기간 요양하거나 수용되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되지 않는 가족

##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표

10. 가구주	20. 가구주의 배우자
01. 가구주의 할아버지	03.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아버지
02. 가구주의 할머니	04.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머니
05. 가구주의 아버지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6. 가구주의 어머니	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14, 다섯째=15, ...)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24, 다섯째=25, ...)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41, 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13, 넷째는 2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23, 넷째는 22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33, 넷째는 234, ...)
996. 가구주의 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로자를 말함.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말함
임시직 임금근로자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다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된 자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음
일용직 임금근로자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말함.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임시공·일일공, 때에 따라서는 계절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함
노인일자리 근로자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노인 인력 운영 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에게 제공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인 근로자를 말함
고용주	사업의 경영주체로 한 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포함)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사람을 말함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주간 1주 동안 ① 1주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②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함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를 말함.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인, 공익근무요원 등이 여기에 해당

## A2. 귀 닥의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습니까?

- ① 예 → A3 이동  
 ② 아니오 → A4 이동

A3.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에 체크해주시고,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응답해주세요.  
 장애유형이 중복인 경우라도 주된 장애유형 하나만 응답해주십시오.

1) 가구원 번호	2) 가구원 성명	3) 주된 장애유형	4) 장애등급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 ⑤ 언어 ⑥ 안면 ⑦ 신장 ⑧ 심장 ⑨ 간 ⑩ 호흡기 ⑪ 장루·요루 ⑫ 뇌전증 ⑬ 지적 ⑭ 정신 ⑮ 자폐증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보 기

## A4. 귀 닥의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기준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자녀가 결혼 및 독립한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해주십시오.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기준의 손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명



## B. 현재 주택

### B1. 귀 닥은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공공임대주택 → **B1-1 이동**
- ② 일반주택 → **B2 이동**

#### B1-1.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50년 공공임대주택 |
| ③ 국민임대주택 | ④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 ⑤ 장기전세주택 | ⑥ 재개발임대주택    |

### B2. 귀 닥의 주택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① 일반단독주택                 | ② 다가구단독주택      |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④ 아파트          |
| ⑤ 연립주택                   | ⑥ 다세대주택        |
|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 ⑧ 오피스텔         |
| ⑨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웜막   | ⑩ 고시원          |
| ⑪ 기숙사                    | ⑫ 기타(특수사회시설 등) |

### B3. 귀 닥의 현재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① 자가        | ② 전세        |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 ⑤ 사글세 또는 연세 | ⑥ 일세        |
| ⑦ 무상        |             |

- 보증금 있는 월세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 사글세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 세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 세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 상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계혈족을 제외하고 응답

### B4. 귀 닥은 현재 주택에 언제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 ] 년 또는 지금으로부터 [ ] 년 전

- 현재 가구주의 기준으로 거주 년도를 응답 받습니다
- 가구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가구주가 살게 된 시점으로 응답 받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명의변경하거나 상속 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거주한 년도를 응답 받습니다

## B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방수는 몇 개입니까?

방  개

-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6척) 이상, 넓이가 3.3㎡(1평) 이상인 거주공간으로서, 취침용, 서재, 옷방, 놀이방으로 이용되는 공간
-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거나(창고 기능) 사용하지 않는 방과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실제로 지내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

## B6.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전용면적(실사용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평 또는  m<sup>2</sup>

-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실사용 면적임

## B7. 귀 택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게 되습니까?

시설의 내용	사용형태	종류
1) 부엌 (B1의 ② 응답자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입식 ② 재래식
2) 화장실 (B1의 ② 응답자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수세식 ② 재래식
3) 목욕시설 (B1의 ② 응답자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온수 ② 비온수
4) 상수도 시설 (B1의 ② 응답자만)	① 연결되어 있음(※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완비도 포함) ② 연결되어 있지 않음	
5) 하수 시설 (B1의 ② 응답자만)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난방 시설 (모두 응답)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기타

**B8. 현재 살고 계신 주택가격 및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전세나 월세는 계약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현재 주택가격 및 임차료</b>	1) 자 가((B3의 ①응답자))	현재가격 : _____ 억 _____ 만원
	2) 전 세(B3의 ②응답자)	전세보증금 : _____ 억 _____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B3의 ③응답자)	보증금 : _____ 억 _____ 만원
		월 세 : _____ 만원
	4) 보증금 없는 월세(B3의④~⑥응답자)	월 세 : _____ 만원

- 입주 당시의 임차료가 아닌 현재 임차료를 기준으로 응답
-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주택 보증금액을 응답

**B9. (B3의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 ⑤사글세 및 연세 가구 응답자만) 현재 살고 계신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1) 금액	(2) 남은 대출금액	(3) 원리금 상환 여부	(4) 원리금 상환액(월)
1) 자기자금	_____ 억 _____ 만원			
2)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여러 기관에서 융자받은 경우 합산)	1금융권 _____ 억 _____ 만원	_____ 억 _____ 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③ 상환완료	_____ 만원
	2금융권 _____ 억 _____ 만원	_____ 억 _____ 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③ 상환완료	_____ 만원
3) 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	_____ 억 _____ 만원	_____ 억 _____ 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③ 상환완료 ④ 기타(중도상환 및 일 시상환 등)	_____ 만원
4)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	_____ 억 _____ 만원			

- 입주 당시의 임차료가 아닌 현재 임차료를 기준으로 마련 금액을 응답
-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주택 보증금액을 응답
- 남은 대출금이 0인 경우 (3) 원리금 상환여부는 ③상환완료로 체크
- 3)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의 경우 이자가 없거나, 일시상환이나 중도상환시 같이 이자를 주기로 한 경우는 모두 ④ 기타에 체크

**B10. (B3의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⑤사글세 및 연세 가구 응답자만) 귀 댁의 임차보증금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③ 약간 부담된다
- ④ 매우 부담된다

- 현재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부담 정도를 응답

**B11. (B3의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⑥일세 가구 응답자만 응답) 현재 살고 계신 임차료(월세)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② 가족·친지의 도움
- ③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④ 주거급여를 제외한 정부 및 지자체 도움
- ⑤ 사회단체 도움
- ⑥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론 이용
- ⑦ 임차료를 마련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음

**B12. (B3의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⑥일세 가구 응답자만 응답) 귀하께서는 월임차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③ 약간 부담된다
- ④ 매우 부담된다

**B13.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상태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표기해주십시오.**

구 분	불량	다소 불량	다소 양호	양호
1) 주택성능(결로·곰팡이, 누수·방수상태 등)	①	②	③	④
2) 마감상태(도배, 장판, 도어, 창문 등)	①	②	③	④
3) 설비상태(냉난방·냉온수 설비, 주방설비, 전등·콘센트 전기기구 등)	①	②	③	④
4) 배리어프리 설계(문턱 제거, 욕실단자 제거, 비상벨 등)	①	②	③	④

B14. 귀 닥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환경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표기해주세요.

구 분	불량	다소 불량	다소 양호	양호
1) 휴게·녹지공간(놀이터, 야외운동시설, 공원 등)	①	②	③	④
2) 주차시설	①	②	③	④
3) 장애인·고령자 배려 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보행로 단차 제거 등)	①	②	③	④
4) 방범상태(CCTV 설치 등)	①	②	③	④

B15.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대중교통 편의성(지하철, 버스 등)	①	②	③	④
2) 교육환경(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	①	②	③	④
3)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시장, 마트, 백화점 등)	①	②	③	④
4) 공공시설 접근성(주민센터, 경찰서 등)	①	②	③	④
5) 문화시설 접근성(도서관, 미술관 등)	①	②	③	④
6) 의료시설 접근성(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①	②	③	④



## C. 현재주택 입주 정보

C1. 귀 가구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경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입주경로
1) 영구임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② 장애인 등 ③ 청약저축 가입자 ④ 3자녀 이상가구 ⑤ 기타(국가유공자 등) ⑨ 잘모르겠음
2) 50년 공공임대	① 일반공급 ② 특별공급-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세입자 ③ 특별공급-새터민 ④ 기타(장애인 등) ⑨ 잘모르겠음
3) 국민임대	① 일반공급 ② 특별공급-신혼부부 ③ 특별공급-고령자 ④ 기타(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세입자 등) ⑨ 잘모르겠음
4) 다가구매입임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② 저소득자 ③ 장애인 등 ④ 기관추천(서울시, 구청, 복지관 등) ⑨ 잘모르겠음
5) 장기전세임대	① 일반공급 ② 특별공급-신혼부부 ③ 특별공급-고령자 ④ 기타(다자녀 등) ⑨ 잘모르겠음
6) 재개발임대	① 재개발 철거세입자 ② 재개발 철거가옥주 ③ 새터민 ④ 기타(수급자 등) ⑨ 잘모르겠음

C2. 귀 댁의 가구주께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만으로 몇 세 였습니까?

만  세

C3.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

## C4. 귀 닥의 가구주께서는 서울특별시 총 거주기간이 몇 년입니까?

년

## C5. 공공임대주택 입주이후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이사 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서
- ② 단지환경, 치안, 교육 등의 주거환경이 좋아서
- ③ 주택 내부의 각종 시설이 좋아서
- ④ 현재 거주하는 집의 평수 또는 방수가 넓어져서
- ⑤ 임차료 및 관리비가 저렴해서
- ⑥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 ⑦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서
- ⑧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서
- ⑨ 시장, 마트, 공공기관 등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 ⑩ 기타( )
- ⑪ 없음

## C6. 공공임대주택 입주이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직장 또는 생활터전과 멀어서
- ② 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아서(사회적 소외 혹은 차별)
- ③ 이웃의 공공질서의식이 부족해서
- ④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⑤ 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 부담이 커서
- ⑥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일상 생활비가 더 들어가서
- ⑦ 가구 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또는 방수가 작아서
- ⑧ 가구 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또는 방수가 커서
- ⑨ 주택 내부의 각종 시설과 설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⑩ 상담소나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입주 후 자격미달, 거리 등)
- ⑪ 범죄, 소음, 쓰레기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 ⑫ 하자보수 등 임대주택 관리가 미흡해서
- ⑬ 기타( )
- ⑭ 없음



## D. 직전주택

**D1. 귀 닥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이전 거주하셨던 주택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① 일반단독주택                 | ② 다가구단독주택      |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④ 아파트          |
| ⑤ 연립주택                   | ⑥ 다세대주택        |
|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 ⑧ 오피스텔         |
| ⑨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웜막   | ⑩ 고시원          |
| ⑪ 기숙사                    | ⑫ 기타(특수사회시설 등) |

**D2. 귀 닥의 직전주택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사글세 또는 연세 | ⑥ 일세        |
| ⑦ 무상        |             |             |

**D3. 귀 닥의 직전 주택의 전용면적(실사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또는

m<sup>2</sup>

**D4. 귀 닥의 직전 주택의 방은 몇 개 입니까?**

개

## D5. 귀 닥의 직전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시설의 내용	(1) 사용형태	(2) 종류
1) 부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입식 ② 재래식
2) 화장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수세식 ② 재래식
3)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온수 ② 비온수
4) 상수도 시설	① 연결되어 있음(※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완비도 포함) ② 연결되어 있지 않음	
5) 하수 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난방 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기타

## D6. (최근 5년이내 입주한 경우만 응답) 귀 닥은 현재 주택에 살기 바로 전에 거주했던 주택에 비해 현재 임차료 및 주거관리비가 줄어들었습니까?

- ① 예 → D6-1 이동  
 ② 아니오 → E. 이사(퇴거) 계획 파트 이동  
 ③ 변화 없음 → E. 이사(퇴거) 계획 파트 이동

## D6-1. 절약된 금액을 주로 다음 중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노후대책      | ② 결혼자금(본인 및 자녀) |
| ③ 사고와 질병 대비 | ④ 자녀교육비         |
| ⑤ 여행 등 여가   | ⑥ 사업자금          |
| ⑦ 생활비       | ⑧ 자기계발          |
| ⑨ 기타( )     |                 |



## E. 이사(퇴거) 계획

E1. 귀 댁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퇴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계획있음 → E2 이동
- ② 계획없음 → E6 이동

E2. 이사(퇴거)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가주택 마련
- ② 입주자격 상실
- ③ 월세보증금 부담
- ④ 계약만기
- ⑤ 주택 규모 확장
- ⑥ 주택 규모 축소
- ⑦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⑧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⑨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⑩ 직장 이동으로 인해(취직, 전근, 개인사업 등)
- ⑪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 ⑫ 가구 상황의 변화(분가, 독립, 이혼, 재혼 등)
- ⑬ 기타( )

E3. 귀 댁이 이사(퇴거)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 ① 현재 주택과 같은 동
- ② 현재 주택과 같은 구의 다른 동
- ③ 현재 주택과 다른 구
- ④ 경기·인천
- ⑤ 수도권 외 다른 지역

E4. 귀 댁이 이사(퇴거)하고자 하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가        | ② 전세        |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 ⑤ 사글세 또는 연세 | ⑥ 일세        |
| ⑦ 무상        |             |

E5. 이사(퇴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주택의 전용면적(실사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또는

m<sup>2</sup>

→ 응답 후 F.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파트 이동

E6. 이사(퇴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어서
- ② 임차료 가격이 민간 일반주택보다 저렴해서
- ③ 민간 일반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 ④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해서
- ⑤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⑥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⑦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 ⑧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아서
- ⑨ 기타( )

→ 응답 후 F.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파트 이동



## F.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가입

※ 가구원별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No	공적연금		국민연금		F5. 개인 연금 가입 여부	F6. 건강 보험
	F1. 가입 여부	F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F3. 가입 종별	F4. 납부 여부		
① 비해당 → F5 이동 ① 연금수급 → F5 이동 ② 연금가입 → F2 이동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 F2 이동 ④ 미가입 → F5 이동 ⑨ 모름 → F5 이동	① 국민연금 → F3 이동 ② 공무원 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 우체국 연금 ⑨ 모름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⑨ 모름 → F5 이동	① 납부하고 있음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⑨ 모름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미가입	
1						
2						
3						
4						
5						

• 1) 공적연금 가입형태	공적연금에는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이 포함되며 보훈연금은 제외				
• 3) 국민연금 가입종별	① 직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함.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②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자를 말함.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해당함 ③ 임의가입자 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함 ④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60세에 도달해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자로 연장 가입하여 수급권을 얻기 위해 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를 말함				
• 4) 국민연금 납부 여부	현재 기준으로 납부 기한을 깜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				
• 5)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만 18세 미만의 가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비해당에 체크					
• 단, 18세 미만 청소년이 직장인일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 가능					



## G. 맞춤형 급여

**G1. 귀 닥은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수급자이십니까?**

① 예 → **G1-1 이동**

② 아니오 → **G2 이동**

**G1-1.** 현재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응답해주십시오. 받고 계신 급여의 수급 형태 및 수급범위도 응답해 주십시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형태에서 중복응답 가능합니다.

급여종류	(1) 수급여부	(2) 수급형태	(3) 수급 범위
1) 생계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수급가구 ④ 긴급생계급여수급가구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2) 의료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3) 주거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① 임차급여 ② 임차급여특례 ③ 수선유지급여	
4) 교육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 **G1-1 응답 후 H.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파트 이동**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일반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므로 가구원 중 한명의 급여수급계좌로만 입금되나  
특례로 인정되는 수급자의 경우 가구와는 개별적으로 수급할 수 있음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
- **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  
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G2. 귀 닥은 현재부터 지난 1년간 맞춤형 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G3 이동
- ② 아니오 → H.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파트 이동

G3.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 ( )
- ⑨ 잘 모르겠다



## H.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H1. 귀 닥은 현재부터 지난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생계비 지원	①	②
2) 의료비 지원	①	②
3) 물품지원	①	②
4) 가정봉사 서비스	①	②
5) 식사 배달 서비스	①	②
6) 주택관련 서비스	①	②
7)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8) 상담서비스	①	②
9) 생계, 생업, 자립, 교육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①	②
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12) 장기요양보험급여	①	②
13) 아동 상담 프로그램	①	②
14) 기타 바우처 서비스( )	①	②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료급여 제외),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생계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3)의 물품지원에 체크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함(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단,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음
• 물품지원	식료품, 의류, 가구 등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
• 가정봉사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의 가정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임
• 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
•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음(단, 주택 관련 대출 불포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
• 장기요양보험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아동 상담 프로그램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과의 직접 면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행동 수정 등의 프로그램 등이 있음
• 기타 바우처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클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이에 해당함



## I. 소득

### I1.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근로소득이 있었습니까?

- 근로소득이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포함

① 있었다

→ I1-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 I2.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사업소득이 있었습니까?

- 사업소득이란 사업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함. 자영업이나 농림어업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연간 순소득(생산물이나 수확물의 연간 총 판매액에서 각종 임차료, 연료비, 농약대, 비료값, 사료값 등 각종 비용은 제외하되 생활비는 포함한 액수)을 말함

① 있었다

→ I2-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 I3.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금융소득이 있었습니까?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 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① 있었다

→ I3-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 I4.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부동산소득이 있었습니까?

- 부동산 소득이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 다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① 있었다

→ I4-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 I5.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사회보험소득이 있었습니까?

- 사회보험 소득
-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이 해당
- 사회보험의 종류는 아래 표 참고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기타
① 국민연금			⑫ 간호수당	
② 공무원연금	⑥ 실업급여	⑨ 휴업급여	⑬ 사망일시금	
③ 군인연금	⑦ 육아휴직급여	⑩ 장해연금	⑭ 생명조정수당	
④ 사학연금	⑧ 직업능력개발급여	⑪ 유족급여	⑮ 군인사망보상금	⑯ 기타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① 있었다 → I5-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 I6.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개인연금 소득이 있었습니까?

-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응답
- 개인연금을 월 단위로 받은 경우, 받은 개월 수 계산해서 총액으로 기입

① 있었다 → I6-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 I7.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공적이전소득이 있었습니까?

- 공적 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현물 포함)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점심 도시락 등 상시적으로 받으시는 보조금 등이 이에 속함.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 1회성으로 정부기관에서 받는 소득도 포함
-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 후 기초연금제도 시행하고 있음.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이하(소득 하위 70%)가 해당  
특수지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적이전소득의 종류는 아래 표 참고

공적이전 소득의 종류	
①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⑦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②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③ 기초연금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④ 한부모가족지원	⑩ 농어업 정부보조금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⑪ 기타(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등)
⑥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① 있었다 → I7-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I8.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사적이전소득이 있었습니까?**

- 사적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나 자녀, 친척, 친지,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민간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이웃, 복지관, 종교 및 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 보조 포함) 등 민간부분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지원금을 말함

① 있었다

→ I8-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I9.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15.01~2015.12) 기타소득이 있었습니까?**

- 기타소득이란 보험금 지급(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위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금 제외),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분실물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폐품매각대금 등과 같이 위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말함

① 있었다

→ I9-1. 연총액

만원

② 없었다



## J. 생활비

J1. 지난 1년 간(2015.01~2015.12) 귀 댁의 생활비는 항목별로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목	액수
1)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월평균 _____ 만원
2) 외식비	월평균 _____ 만원
3) 자녀 공교육비(초등학교 이상 자녀 학교 등록금, 납임금 등)	월평균 _____ 만원
4) 자녀 사교육비(미취학아동 보육비, 학원, 과외비 등)	월평균 _____ 만원
5)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 (안경, 콘택트렌즈 등) 등	월평균 _____ 만원
6) 주거관리비 · 광열수도비(월임차료, 주택설비 수선비,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취사연료비, 화재보험료 등)	월평균 _____ 만원
7) 가구·가사용품비(가구, 가정용 기기, 식기 주방 용품, 가사 서비스료 등)	월평균 _____ 만원
8) 의류 · 신발비(겉옷, 속옷, 신발, 모자 등의 구입비, 수선, 세탁, 대여비)	월평균 _____ 만원
9) 교양오락비 (서적, TV등 교양오락용품 기구 구입, 공연경기관람, 운동강습료, 여행비 등)	월평균 _____ 만원
10) 교통 · 통신비(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수단 이용료,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기름값, 대리운전비)	월평균 _____ 만원
11) 기타소비지출(담배, 위생, 미용, 장신구, 손해보험, 보장성 보험, 경조비, 현금, 시주, 기부금 등)	월평균 _____ 만원
<b>12) 총 생활비((1)+(2)+(3)+(4)+(5)+(6)+(7)+(8)+(9)+(10)+(11))</b>	<b>월평균 _____ 만원</b>

-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돈
- 생활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1)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타 가구에 보내는 돈 등
  - (2) 저축,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유가증권 부동산 구입, 빌려준 돈 등
  - (3) 주택부금 상환, 빌린 돈 같은 금액 등
  - (4)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 등

J2. 지난 1년 간(2015.01~2015.12)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J2-1 이동
- ② 아니오 → J3 이동

J2-1. 생활비 부족 시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고정 저축비용 중 일부활용 | ② 대출         |
| ③ 신용카드·카드론       | ④ 가족 및 친지 도움 |
| ⑤ 친구 및 이웃 도움     | ⑥ 연체 또는 미납   |
| ⑦ 생활비를 줄임        | ⑧ 기타( )      |

**J3. 지난 1년 간(2015.01~2015.12) 겨울철 난방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 |  |   |
|--|---|
| ①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br>③ 매우 출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br>⑤ 기타( ) | ② 다소 춥더라도 아껴서 사용한다<br>④ 보일러는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이용한다 |
|--|---|

**J4. 지난 1년 간(2015.01~2015.12) 여름철 냉방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 |  |                                |
|--|--------------------------------|
| ① 에어컨이 있고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br>③ 에어컨 없이 선풍기, 쿨매트 등을 이용한다 | ② 에어컨이 있지만 아껴서 사용한다<br>④ 기타( ) |
|--|--------------------------------|

**J5. 지난 1년 간(2015.01~2015.12) 주거관리비 · 광열수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습니까?**

- |                                      |                            |
|--------------------------------------|----------------------------|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br>③ 약간 부담된다<br>⑨ 해당없음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br>④ 매우 부담된다 |
|--------------------------------------|----------------------------|

**J6. 지난 1년 간(2015.01~2015.12) 동안 저축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모든 형태의 저축액 총합을 응답해 주십시오.**

- 저축에는 일반 저축, 적금,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 계 등이 포함됩니다.
-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을 말합니다. 예로 새가정복지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① 저축을 하였다 → J6-1. 월평균

만원

② 저축을 하지 않았다

**J7. 귀댁은 지난 1년 간(2015.01~2015.12)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1)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임차료가 밀렸다	①	②	
2)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못내서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3)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⑨
4)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①	②	
5)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다	①	②	
6) 돈이 없어서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7)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 K. 자산

※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조사 당시)의 시세를 답하여 주십시오.

**K1. 귀택에서는 현재 살고 계신 집 이외에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주택이나 건물, 축사, 임야, 토지 등)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K1-1 이동**
- ② 아니오 → **K2 이동**

**K1-1.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신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주택    | ② 주택 이외의 건물 |
| ③ 임야·토지 | ④ 기타( )     |

**K1-2. 이 부동산들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소유 부동산의 합으로 응답

① 총  만원 → **K2 이동**

② 잘 모르겠다 → **K1-2-(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②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③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④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⑤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⑥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⑦ 3억원 이상

K2. 귀댁에서는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내고 빌려 쓰고(임차하고) 계시는 부동산(주택이나 건물, 축사, 임야, 토지 등)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K2-1 이동  
 ② 아니오 → K3 이동

K2-1. 부동산의 주인에게 낸 보증금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임차 부동산의 보증금 총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총  만원 → K3 이동

② 잘 모르겠다 → K2-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②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④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⑥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⑦ 3억원 이상

③ 임차 보증금 없음

K3. 귀댁에는 토지나 건물 이외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이 있으십니까? 그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 소유 여부	(2) 금 액
1)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총 _____만원
2) 기타자산( )	① 예 ② 아니오	총 _____만원

- 자동차는 구입가격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를 중고가로 판매할 경우의 금액을 기입해주십시오.
- 기타자산에는 농기계, 농기구, 임업용 기계 및 기구, 선박, 어로용 장비, 가축, 가금류 등이 포함됩니다.

K4. 귀댁은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 소유 여부	(2) 금 액
1) 은행예금(정기 예·적금, 저축성 예금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2) 주식, 채권, 신탁	① 예 ②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3) 저축성 보험(교육보험, 연금보험 등)	① 예 ②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4) 아직 타지 않은 계	① 예 ②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5)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 은행예금      예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분류. 요구불예금은 예금주의 출입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함.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어린이예금 ·가계종합예금 ·비거주자 원화예금 등이 있음  
저축성예금은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목돈마련 저축 등을 포함
- 주식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
- 채권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함.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이 있음
- 신탁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이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 개발신탁, 일반불특정 금전신탁, 적립식 목적 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이 이에 포함
- 저축성 보험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 지금까지 낸 돈(불입총액)을 응답
- 계      목돈 마련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주기적으로 구성원들이 일정금액을 모아 목돈을 마련. 아직 타지 않은 계는 지금까지 부은 것돈의 총액을 써 주십시오. 만약 이미 일부를 탔다면 탄 액수를 빼고 응답
- 기타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고가의 내구재(현재 시가 300만원 이상)

K5. 귀댁에는 다음과 같은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갚아야 할 잔액 총액과 한 달 평균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구 분	(1) 부채 유무	(2) 현재잔액 (남은 대출금액)	(3) 원리금 상환 여부	(4) 원리금 상환액
1) 금융기관 부채 (주택융자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 포함)	1금융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월 _____만원
	2금융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월 _____만원
2) 비금융기관 부채 (사채, 회사를 통해 혹은 친구·친지에게 빌린 돈, 앞으로 부어야 할 계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③ 기타(중도상환 및 일시상환 등)	월 _____만원
3) 부동산 임대 보증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원		

### ※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만 응답

K6. (K5-1)-(3) 또는 K5-2)-(3) 원리금 상환 여부에 ①응답자만 응답)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생계에 주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K7 이동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K7 이동 |
| ③ 약간 부담된다 → K6-1 이동   | ④ 매우 부담된다 → K6-1 이동   |

K6-1. 원금과 이자를 내는 부담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 |               |
|---------------|
| ① 예 → K6-2 이동 |
| ② 아니오 → K7 이동 |

K6-2. 줄이고 있는 생활비 항목 중 가장 큰 순서대로 2개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식료품비     | ② 외식비         |
| ③ 자녀 공교육비  | ④ 자녀 사교육비     |
| ⑤ 보건의료비    | ⑥ 주거관리비·광열수도비 |
| ⑦ 가구·가사용품비 | ⑧ 의류·신발비      |
| ⑨ 교양오락     | ⑩ 교통·통신비      |
| ⑪ 기타소비지출   |               |

K7. 귀 닥의 부채가 생긴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주택마련 및 임차보증금/임차료 마련 | ② 고금리 대출  |
| ③ 사업자금 마련             | ④ 결혼자금 마련 |
| ⑤ 의료비 마련              | ⑥ 교육비 마련  |
| ⑦ 기타( )               |           |

**가구용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